

제27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록 (부록)

목 차

- 제27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의안 검토보고서..... 2면
- 제27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출 의안..... 7면
- 제27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추경 및 기금 심사보고서..... 17면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3. 9. 11.(월) 11:0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7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안 검토보고서

〈 의 안 목 록 〉	〈 제 출 자 〉
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성 주 군 수】
2.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1. 제안자 : 성주군수

2. 제안이유

- 성주소방서 청사 준공 24년('98. 9월 준공)이 경과하여 협소하고 노후화된 소방청사를 증축하여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성주소방서 증축 계획(성주소방서-10753호)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3. 주요내용

- 대상토지 : 성주읍 삼산리 49(대지 5,289 m²)
- 건축주 : 성주소방서(경상북도)
- 건축현황
 - 당초 : 지상2층 연면적 2,261m²
 - 변경 : 지상2층 연면적 2,261m² + 지상 4층 연면적 1,369m² 증축
※ 증축동(기계실, 예방안전과, 재난대응과, 아이행복돌봄터 등)
- 건축비 : 42억원 정도(도비)
- 건축기간 : 2023년 ~ 2024년

4.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5. 검토의견

- 본 안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제11호에 따라 공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해 의회 동의를 받기 위한 것으로,
- 1998년 9월 준공한 성주소방서는 협소하고, 노후화되어, 소방서를

증축하여 성주군의 열악한 소방 환경개선으로 성주군민에게 양질의 소방안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입니다.

- 시설개선 및 장비 보강 등으로 지역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므로 성주소방서 증축이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개정이유

-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최실적이 저조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비상설화 및 서면심의 규정신설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보증한도 증액(안 제4조4항)
- 국가, 경상북도 이차보전과 중복으로 지원 가능(안 제7조1항)
- 용어정비(안 제9조2항, 3항)
- 소상공인지원위원회 비상설화 및 서면심의 규정 신설(안 제9조4항, 제13조3항)

4.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기 타
 - 입법예고 : 2023. 5. 12(금) ~ 6. 1(목) / 20일간
 - 규제심사 : 해당없음 [기획예산실-4304(2023.4.10.)]
 -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 [가족지원과-18608(2023.4.12.)]
 -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5. 검토의견

- 본 조례안은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활성화 및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 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 한도를 증가하며, 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며, 개최 실적이 저조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비활성화 및 서면심의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소상공인들이 자율적으로 연대하고 상생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2023. 9. 11.(월) 11:00
성주군의회 본회의장

제27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 제출 의안

〈 의 안 목 록 〉	〈 제 출 자 〉
1.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성 주 군 수】
2.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 주 군 수】



성 주 군 의 회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3년 8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제안이유

성주소방서 청사 준공 24년('98. 9월 준공)이 경과하여 협소하고 노후화된 소방청사를 증축하여 직원 근무환경을 개선코자, 성주소방서 증축 계획(성주소방서-10753호)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의거 공유지에 영구시설물 축조를 위한 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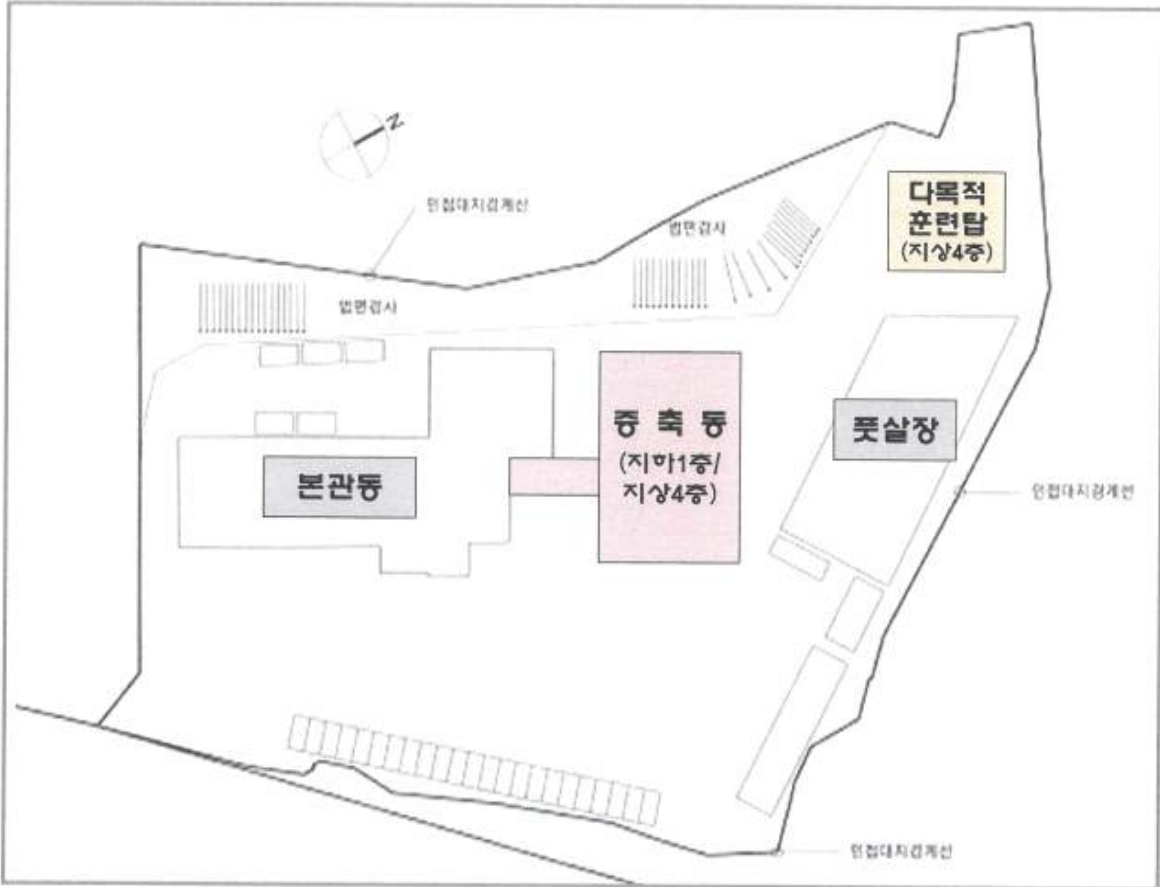
2. 주요내용

- 가. 대상토지 : 성주읍 삼산리 49(대지 5,289 m²)
- 나. 건축주 : 성주소방서(경상북도)
- 다. 건축현황
 - 당초 : 지상2층 연면적 2,261m²
 - 변경 : 지상2층 연면적 2,261m² + 지상 4층 연면적 1,369m² 증축
 - ※ 증축동(기계실, 예방안전과, 재난대응과, 아이행복돌봄터 등)
- 라. 건축비 : 42억원 정도(도비)
- 마. 건축기간 : 2023년 ~ 2024년

3. 근거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9조

[붙임 1] 성주소방서 증축 계획

□ 배치도



□ 조감도



[붙임 2] 근거 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외의 자는 공유재산에 건물, 도랑·다리 등의 구조물과 그 밖의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없다. 다만, 그 공유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①법 제13조 단서에 따라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 10. 생략

1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 제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공용재산(이하 “공용재산”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공공용재산(이하 “공공용재산”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장 간에 서로 합의하고 해당 지방의회가 동의한 경우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일자 : 2023년 8월 일
제출자 : 성 주 군 수

1. 개정이유

경기침체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개최실적이 저조한 소상공인지원위원회의 비상설화 및 서면심의 규정신설로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보증한도 증액(안 제4조4항)
- 나. 국가, 경상북도 이차보전과 중복으로 지원 가능(안 제7조1항)
- 다. 용어정비(안 제9조2항, 3항)
- 라. 소상공인지원위원회 비상설화 및 서면심의 규정 신설(안 제9조4항, 제13조3항)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소상공인기본법」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 다. 기 타
 - 1) 입법예고 : 2023. 5. 12(금) ~ 6. 1(목) / 20일간
 - 2) 규제심사 : 해당없음 [기획예산실-4304(2023.4.10.)]
 - 3) 성별영향평가 분석 : 해당없음 [가족지원과-18608(2023.4.12.)]
 - 4) 비용추계서 : 미첨부사유서 붙임

성주군 조례 제 호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한다.

제7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2항 중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기업경제과장으로 하고”를 “소상공인 분야와 관련있는 예산·정책·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업무담당주사가”를 “소상공인 업무담당부서 팀장이”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군수는 안건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

제12조를 삭제하고, 제13조부터 제17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로 한다.

제13조(중전의 제1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p> <p>① ~ ③ (생 략)</p> <p>④ 제1항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는 소상공인 1명에 대하여 <u>2천만원</u> 이내로 한다.</p> <p>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군수는 신용보증기관의 특례보증에 의하여 대출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차보전금 지원을 중지 및 환수 할 수 있다.</p> <p>1. <u>각종 소상공인 지원 자금을 중복해서 지원받는 경우</u></p> <p>2. ~ 4. (생 략)</p> <p>제9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① (생 략)</p> <p>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u>당연직위원은 기획감사실장, 주민복지과장, 기업경제과장으로 하고</u> 이외는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p>	<p>제4조(소상공인 특례보증지원)</p> <p>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3천만원</u> ----- -----.</p> <p>제7조(지원중지 및 환수) ----- ----- ----- ----- -----.</p> <p style="text-align: center;"><삭 제></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9조(소상공인지원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u>소상공인 분야와 관련있는 예산·정책·복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으로 하고,</u> --- -----.</p>

<p>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u>업무담당주사가 된다.</u></p> <p><신 설></p> <p>제12조(위원의 임기) <u>위원 중 공무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u></p> <p>제13조 (생략)</p> <p>제14조(회의) ① <u>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u></p> <p>② (생략)</p> <p><신 설></p> <p>제15조 ~ 제17조 (생략)</p>	<p>③ ----- ----- <u>소상</u> <u>공인 업무담당부서 팀장이</u> ----- -----.</p> <p>④ <u>군수는 안전이 발생하면 위원회를 구성하되, 심의·의결이 끝나면 해산한다.</u></p> <p><삭 제></p> <p>제12조 (현행 제13조와 같음)</p> <p>제13조(회의) ① <u>위원회의 회의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회의를 소집한다.</u></p> <p>② (현행과 같음)</p> <p>③ <u>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u></p> <p>제14조 ~ 제16조 (현행 제15조부터 제17조까지와 같음)</p>
---	--

관련법령 발취

◆ 「소상공인기본법」

[시행 2021. 3. 9.] [법률 제17623호, 2020. 12. 8. 일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사회적·경제적 지위 향상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책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소상공인의 보호와 자주적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시책에 따라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그 지역의 소상공인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상공인 보호·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 간의 협력과 소상공인시책의 연계를 통하여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성주군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가. 재정수반요인

해당 없음

나. 미첨부 근거 규정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다. 미첨부 사유

「성주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라. 작성자

기업경제과 지역경제팀장

소통하는 의정 실천하는 의회

제 275회 성주군의회
'23. 9. 11. 본회의장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 사 보 고 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심 사 보 고 서

1. 제 안 자 : 성주군수

2.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8. 29.(화)

나. 회부일자 : 2023. 9. 4.(월)

다. 상정일자: 제275회 성주군의회(임시회)

- 제1차 예결특위(2023. 9. 4) 상정,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운영, 계획서 채택
- 제2차 예결특위(2023. 9. 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부서별 설명
- 제3차 예결특위(2023. 9. 6) 상정, 부서별 설명
- 제4차 예결특위(2023. 9. 7) 상정, 부서별 설명
- 제5차 예결특위(2023. 9. 8) 상정, 부서별 설명, 계수조정
- 제6차 예결특위(2023. 9. 11) 종합검토, 의결

3. 제안설명 요지

가. 설 명 자 : 기획예산실장 백대흠(제2차 예결특위 본문 참조)

나.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 제145조에 의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 승인을 받고자 함.

다. 주요골자

1)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기 정 액		비교증감		
		구성비		구성비		증감률	
총 계	683,007,000	100.00%	664,007,000	100.00%	19,000,000	2.86%	
일반회계	605,400,000	88.64%	586,900,000	88.39%	18,500,000	3.15%	
특별회계	33,120,000	4.85%	32,800,000	4.94%	320,000	0.98%	
회 계 별	의료급여기금운영특별회계	887,000	0.13%	877,000	0.13%	10,000	1.14%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	124,000	0.02%	124,000	0.02%	0	0.00%
	수질개선사업특별회계	5,260,000	0.77%	5,240,000	0.79%	20,000	0.38%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40,000	0.01%	40,000	0.01%	0	0.00%
	성주군일반산업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	1,851,000	0.27%	1,851,000	0.28%	0	0.00%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임시특별회계	60,000	0.01%	60,000	0.01%	0	0.00%
	치수사업특별회계	340,000	0.27%	340,000	0.05%	0	0.00%
	상수도사업특별회계	5,693,000	0.01%	5,403,000	0.81%	290,000	5.37%
	하수도사업특별회계	18,865,000	0.05%	18,865,000	2.84%	0	0.00%
	기 금	44,487,000	6.51%	44,307,000	6.67%	180,000	0.41%
성주군인재육성기금	7,857,084	1.15%	7,857,084	1.18%	0	0.00%	
성주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2,520,000	0.37%	2,520,000	0.38%	0	0.00%	
성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	210,000	0.03%	210,000	0.03%	0	0.00%	
성주군노인복지기금	620,700	0.09%	616,700	0.09%	4,000	0.41%	
성주군자활기금	716,457	0.10%	716,457	0.11%	0	0.00%	
성주군식품진흥기금	184,000	0.03%	184,000	0.03%	0	0.00%	
성주군옥외광고발전기금	61,909	0.01%	61,909	0.01%	0	0.00%	
성주군재난관리기금	1,596,850	0.23%	1,420,850	0.21%	176,000	0.41%	
성주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519,000	4.47%	30,519,000	4.60%	0	0.00%	
성주군고향사랑기금	201,000	0.03%	201,000	0.03%	0	0.00%	

2) 일반회계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증감률
총 계		605,400,000	100.00%	586,900,000	100.00%	18,500,000	100.00%
세 입 예 산	지방세수입	45,030,430	7.45%	46,704,430	7.95%	△1,674,000	△9.04%
	세외수입	20,991,337	3.46%	17,313,002	2.94%	3,678,335	19.88%
	지방교부세	266,275,000	43.98%	282,785,000	48.18%	△16,510,000	△89.24%
	조정교부금등	13,143,020	2.17%	10,000,000	1.70%	3,143,020	16.98%
	보조금	191,389,488	31.61%	186,872,005	31.84%	4,517,483	24.4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8,570,725	11.32%	43,225,563	7.36%	25,345,162	137%
총 계		605,400,000	100.00%	586,900,000	100.00%	18,500,000	3.15%
세 출 예 산	일반공공행정	27,269,247	4.50%	24,204,633	4.12%	3,064,614	12.66%
	공공질서및안전	32,099,776	5.30%	23,874,364	4.07%	8,225,412	34.45%
	교육	4,284,355	0.7%	4,234,355	0.72%	50,000	1.18%
	문화및관광	48,735,918	8.05%	48,888,427	8.33%	△152,509	△0.31%
	환경	61,420,034	10.15%	59,954,810	10.22%	1,465,224	2.44%
	사회복지	104,784,801	17.31%	103,036,666	17.56%	1,748,135	1.70%
	보건	8,287,706	1.37%	7,742,282	1.32%	545,424	7.04%
	농림해양수산	112,087,457	18.51%	107,326,947	18.29%	4,760,510	4.44%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5,882,453	2.62%	14,932,910	2.54%	949,543	6.36%
	교통및물류	25,373,747	4.19%	24,708,714	4.21%	665,033	2.69%
	국토및지역개발	94,124,076	15.55%	88,596,215	15.10%	5,527,861	6.24%
	예비비	3,665,381	0.61%	12,743,443	2.7%	△9,087,062	△71.24%
	기타	67,385,049	11.13%	66,656,234	11.36%	728,815	1.09%

3) 특별회계 총괄

(단위: 천원)

구 분		예 산 액	구성비	기 정 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률	증감률
총 계		33,120,000	100.00%	32,800,000	100.00%	320,000	100.00%
세 입 예 산	보조금	13,198,102	39.84%	13,188,102	40.20%	10,000	3.12%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5,274,912	46.11%	14,964,912	45.62%	310,000	96.87%
총 계		33,120,000	100.00%	32,800,000	100.00%	320,000	0.98%
세 출 예 산	환경	28,108,000	84.87%	27,798,000	84.75%	310,000	1.12%
	사회복지	1,011,000	3.05%	1,001,000	3.05%	10,000	1.0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40,000	0.12%	40,000	0.12%	0.0	0%
	국토및지역개발	2,202,549	6.65%	2,202,549	6.72%	0	0%
	기타	1,758,451	5.31%	1,758,451	5.36%	0	0%

4)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구성비	기정액	구성비	비교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계	44,487,000	6.51%	44,307,000	6.67%	180,000	0.41%
기금	44,487,000	6.51%	44,307,000	6.67%	180,000	0.41%
성주군인재육성기금	7,857,084	1.15%	7,857,084	1.18%	0	0.00%
성주군공무원주거안정기금	2,520,000	0.37%	2,520,000	0.38%	0	0.00%
성주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210,000	0.03%	210,000	0.03%	0	0.00%
성주군노인복지기금	620,700	0.09%	616,700	0.09%	4,000	0.41%
성주군자활기금	716,457	0.10%	716,457	0.11%	0	0.00%
성주군식품진흥기금	184,000	0.03%	184,000	0.03%	0	0.00%
성주군옥외광고발전기금	61,909	0.01%	61,909	0.01%	0	0.00%
성주군재난관리그금	1,596,850	0.23%	1,420,850	0.21%	176,000	0.00%
성주군통합재정안정화기금	30,519,000	4.47%	30,519,000	4.60%	0	0.00%

4. 검토의견

- 검토보고 : 전문위원 도 재 만(제2차 예결특위 부록 참조)

5.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특이사항 없음)

6. 토론요지 : 특이사항 없음

7. 심사결과

- 2023년도 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수정가결
- 2023년 기금운용계획안 : 원안가결

8. 기타 특이한 사항 : 없음

9. 수정조서 등 : 별첨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조서

□ 세출예산 총괄표

[단위:천원]

회 계 별	단 체 장 제 출 예 산			수 정 (안)		수정예산액
	제1회 추경 예 산 액	기정예산액	증 감	감 액	증 액	
합 계	682,827,000	664,007,000	19,000,000	△654,750	654,750 (예비비)	682,827,000
일 반 회 계	605,400,000	586,900,000	18,500,000	△654,750	654,750 (예비비)	605,400,000
특 별 회 계	33,120,000	32,800,000	320,000	-	-	-
기 금	44,307,000	44,307,000	180,000	-	-	-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삭감 조서

연번	소관부서	세부사업명	통계목	부기내용	요구액 (천원)	사정액 (천원)	인정액 (천원)	재원	비고
	12건				18,820,000	654,750	18,165,250		
1	문화예술과	문화예술 시설관리	401-01	○봉축탐밋트리설치	30,000	10,000	20,000	군비	
2	농정과	농정시책 개발	201-01	○2024년농사달력제작	30,000	10,000	20,000	군비	
3	농정과	농촌인력중개센터지원	307-02	○농촌인력중개센터지원(민간)	90,000	45,000	45,000	국비 45,000 군비 45,000	
4	산림축산과	도시숲조성 및 관리	401-01	○도시숲수목관수	8,000	8,000	0	군비	
5	산림축산과	가로수식재 및 관리	401-01	○금수면광산~후평구 간느티나무전정	40,000	20,000	20,000	군비	
6	산림축산과	자녀안심그린숲조성	401-01	○자녀안심그린숲조성사업	5,000	1,750	3,250	기금 2,500 도비 750 군비 1750	
7	산림축산과	축산물소비촉진행사	307-02	○축산물소비촉진행사 지원	10,000	10,000	0	군비	
8	건설과	주민숙원 도로사업	401-01	○월항인촌도로(리도 10-201호선)확포장공사(L=200m)	10,000	10,000	0	군비	
9	체육시설사업소	성주별고을 종합체육시설조성사업(전환사업)	401-01	○성주별고을종합체육시설조성사업매장문화재정밀발굴조사용역	300,000	300,000	0	군비	
10	체육시설사업소	체육시설 관리	401-01	○신파소규모체육공원 조성사업실시시설계용역	10,000	10,000	0	군비	
11	자원순환사업소	재활용품선별 및 폐부직포시설운영	401-01	○영농폐기물및폐부직포위탁처리비	300,000	200,000	100,000	군비	
12	성주읍	소규모주민숙원사업(주민참여예산)	401-01	○성산6리(장자골)세천정비공사(L=100m)	30,000	30,000	0	군비	